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9 발의연월일: 2020. 11. 27.

발 의 자: 장철민·양정숙·송옥주

송갑석 · 안호영 · 앙이원영

박영순 · 윤미향 · 정태호

황운하・최종윤・윤준병

김민철 · 임오경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면서도 특례 규정을 두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인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건설·제조업 부문 산업재해보험료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은 것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하청·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 에만 연계되도록 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위험을 외주화한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용사 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사고 등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그 감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 항 및 제15조의2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하한 비율"을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관계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관계수급 인을 말한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3.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보험료 감면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5조제2항의 개별실적요율의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 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
 - 2. 그 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실적요율의 인정을 받은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별실적요율의 감면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생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	
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	
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	
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	
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	
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상하거나 <u>인하한 비</u>	인하한 비율(이 <u>하</u>

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 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 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신 설>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을 산정할 때 수급인·관계수 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 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 인 · 관계수급인을 말한다) 또 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 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 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 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도급인을 말한다) 또는 사 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의

③ ~ ⑩ (생 략)

<신 설>

-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의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 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가 발생한 경우
- 3.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 사하는 중 업무상 재해가 발 생한 경우
- ④ ~ <u>①</u> (현행 제3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
- 제15조의2(보험료 감면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5조제2항의 개별실적요율의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

 해 발생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
- 2. 그 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실적요율의 인정을 받은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따라 징수한다.
-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 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